

## 면허형 국가자격 특성과 보수교육 실태\*

김미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I. 들어가며

면허형 자격은 면허 받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전반적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자격 취득 전에 일정 수준의 훈련을 받도록 필수 규정을 만들어 두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격 취득 이후에도 해당 자격의 질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보수교육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자격 취득자의 능력을 유지 혹은 발전시키기 위한 기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위험의 정도가 높거나, 정보통신분야 등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분야 등에서 보수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보수교육은 위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강조되고 있지는 않다. 지난 2006년 보수교육 개정 당시 보수교육이 특정 직업단체의 수익 창출 도구로 오남용 되는 점과 지나친 직업적 규제, 그리고 형식적으로 흐르는 보수교육에 대한 자격 취득자들의 불신 등으로 인하여 보수교육에 대한 폐지 등이 논의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 변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대한 내적 요구와 더불어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및 호환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격 취득자의 평생학습을 위해 보수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면허형 국가자격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보수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면허형 자격의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 김미숙·주인중·김덕기·오혁제(2012),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 실태 분석』(발간 예정)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최근의 기술 변화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대한 내적 요구와 더불어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및 호환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의 중요성이 대두

## II. 국가자격 현황 및 면허 유형 분류

### 1. 국가자격 현황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자격기본법 제2조 제4호). 이러한 국가자격은 정부 부처별 개별법(이하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으로 구분된다.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면허형 국가자격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자격기본법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에 의하면, 국가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이거나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자격 취득 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및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를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정부 부처별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으로 구분

따라서 이러한 국가자격은 정부에서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자격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은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장이 자격증 발급의 주체가 되며, 발급을 위한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이를 위임·위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자격의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지만 관리·운영 주체는 중앙정부 부처가 아닌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전국 단위의 직업협회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택시운전면허는 여객운송법에 의해 국토해양부-시도지사가 관련되지만, 면허는 전국택시운송조합장이 발급하고 있다.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의 경우 관광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의해 신설되었으나,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에서 등록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면허 등록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가자격을 판별함에 있어 3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해당 자격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는가, 둘째, 발급 주체가 정부 부처 혹은 법률에 의한 위

임·위탁기관인가, 셋째, 자격기본법의 국가자격 신설 범위에 해당되는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파악된 국가자격은 75개 개별법에 의해 148개 자격, 831개 자격종목이 있다.

### 2. 면허형 국가자격 유형 분류

국가자격은 법에 의해 제한된 영역에서 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의 관련 업무 행위의 ‘허가’의 의미로서 자격증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자격증은 어떤 경우에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이용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해야 할 피고용인의 자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가자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용 내용을 근거로 4가지 유형, 사업 면허형, 의무배치형, 직무 허가형, 행위허가형으로 분류

이에 본고에서는 법률<sup>1)</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용 내용을 근거로 국가자격을 4가지 유형, 즉 사업면허형, 의무배치형, 직무허가형, 행위허가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국가자격 유형별 정의와 관련 자격의 예를 정리하여 <표 1>에 담았다.

1) 본고에서는 해당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한정하여 그 활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즉,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활용 내용을 살펴보았다.

표 1. 법에 기반한 면허형 국가자격 유형별 정의

유형	정의	자격 예
사업면허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개업이 가능한 자격</li> <li>• 법 조항: “~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혹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등으로 제시</li> </ul>	공인노무사 변호사 수의사 약사
의무배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을 전제로 하며, 사업주가 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자격 취득자를 고용하도록 규정</li> <li>• 법 조항: “~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혹은 “~를 두어야 한다”, “~를 행할 수 없다”, “~시켜야 한다” 등으로 제시</li> </ul>	농산물품질관리원 물리치료사 원자로조종사면허
직무허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그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지녀야 할 자격, 의무배치형과의 차이는 고용을 전제로 의무배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임.</li> <li>• 법조항: “~를 고용할 수 있다”, “~를 하려는 사람은 자격증(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 할(들) 수 있다”, “~를 채용하도록 권장한다”, “~가 아니면 행위를 할 수 없다” 등으로 제시</li> </ul>	간호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주류제조관리사
행위허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률에서 규정한 우대 조건을 취업에 활용 가능하거나 해당 행위에 대한 허가</li> </ul>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동차운전면허

현재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148개를 <표 1>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이는 75개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을 분석하여 분류한 것이다.

표 2. 면허형 국가자격 유형 분류

유형	자격명
사업면허형 (32개/ 21.6%)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기술지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중개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안경사, 안마사 약사, 외국세무자문사, 의사, 전문의,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의사, 행정사, 화물운송종사자격
의무배치형 (46개/ 31.1%)	가축인공수정사,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경기지도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구명정수, 기관사,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도선사, 말조련사 무대예술전문인, 무선통신사, 보건교사, 보육교사*, 보협계리사, 사서, 사회복지사* 산림기술자, 산림치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소형선박조종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아마추어무선기사, 언어재활사, 요양보호사, 운항사 응급구조사, 의료관리자, 의지·보조기기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통신사, 평생교육사*, 항공운항관리사 항해사, 화재조사관
직무허가형 (58개/ 39.2%)	간호사, 경량항공기조종사, 경주심판, 교통안전관리자, 군항공교통관제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문화재수리기능사, 문화재수리기술사, 물류관리사 물리치료사,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방사선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보건교육사, 보세사 부조종사, 사서교사, 사업용조종사, 소방안전교육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영양사 운송용조종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위생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임상영양사, 자가용조종사, 작업치료사, 전문간호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조산사 주류제조관리사, 준교사,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차량운전면허, 치과위생사, 택시운전자격, 한국어교원, 한약조제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환경측정분석사, 환지사
행위허가형 (12개/8.1%)	간호조무사,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유통관리사, 자동차운전면허, 장례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주: \*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자격 취득자를 배치하여야 함.  
자료: 75개 개별법

### Ⅲ. 보수교육 관련 법령 분석

보수교육과 관련된 법령은 자격기본법 제35조(보수교육),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 2(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교육훈련), 기술사법 제5조의 3(기술사의 교육훈련)이 대표적이다.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의 법적 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148개 국가자격과 관련한 75개의 개별법을 분석하였다. 보수교육 조항이 있는 자격은 66개(약 45%)이며, 보수교육에 관한 언급이 없는 자격은 82개이다. 보수교육 조항이 있는 66개 자격 중에서, 의무를 명시한 자격은 48개이며, 보수교육이 권고 정도인 자격은 16개, 그리고 일부 대상자만 의무로 한 경우는 2개이다. 보수교육 조항이 있는 66개 자격에 대한 보수교육의 법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교육 조항이 있는 자격은 66개(약 45%). 그중에서 의무를 명시한 자격은 48개, 보수교육이 권고 정도인 자격은 16개, 일부 대상자만 의무로 한 경우는 2개

첫째,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사항이다. 검정기관이 직접 교육을 하는 자격은 경주선수, 경주심판 자격 2개뿐이고, 62개 자격은 보수교육을 위탁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경매사는 보수교육 기관이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보수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보수교육 방법은 온라인 교육이 1개 자격(보육교사)이고, 집체교육이 36개, 그리고 혼합형이 16개이며, 여기에는 교육방법이 미지정된 자격(공인중개사, 경매사), 책자 발송을 통해 교육을 갈음하는 자격(아마추어무선기사), 종사자의 소속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확인이 불가능한 자격(운항관리사)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보수교육 면제조항에 관한 사항이다. 국가자격 보수교육에 대한 면제조항이 있는 자격은 32개이며, 나머지 34개 자격은 면제조항이 없다. 보수교육을 미이수하였을 때 제재하는 자격은 13개 자격으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자격은 4개(수의사, 한약사, 약사, 청소년상담사)이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자격은 3개(공인노무사,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1개(사회복지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5개(변리사, 변호사, 영양사, 운항관리사, 주택관리사) 자격이다.

넷째,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다. 19개의 자격은 자격 취득자만을 보수

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42개의 자격은 자격증을 가진 직무 종사자를, 그리고 나머지 5개 자격은 기타 자격증 여부와는 상관없이 직무종사자 등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의 문제점은 ① 국가자격의 공적 가치와 공익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조항이 없는 자격이 있고 ② 보수교육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자격 중 교육 시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경우가 있으며 ③ 면제조항은 존재하나 면제를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자격이 많다는 점임

그런데 이러한 보수교육의 법적 근거를 살펴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보수교육 조항의 존재 여부이다. 국가자격은 대부분 국민의 생명·신체·안전과 관련된 자격인데,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방시설관리사 등은 이와 관련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자격의 공적 가치와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권고규정보다는 의무규정이 타당한 바 이들 자격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의 보수교육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는 보수교육 관련 조항이 존재하는데 반해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는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보수교육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자격 48개 중 38개의 자격만이 교육시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10개 자격의 경우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조항이 있는 자격 중 청소년상담사와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경우 보수교육 시간 관련 조항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벌칙조항까지 마련해 두었음에도 교육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등은 시간관련 규정이 있어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일수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물론 자격의 성격에 따라 시간 단위가 바람직할 수도 있고 날짜 단위가 바람직할 수는 있어 반드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날짜 단위로 되어 있는 자격의 경우 사실상 일수만 채우면 되고 하루 몇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추정조차 할 수 없어 실제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자격의 성격을 고려하되 가능한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보수교육 운영에 있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면제조항은 존재하나 면제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특히, 보수교육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미이수 시 벌칙조항까지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해야 하나 면제조항 등과 같은 세부 규정이 없는 자격도 많다. 또한 존재하더라도 면제 결정이나 거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벌칙조항이 있는 13개의 자격 중 7개의 자격에만 면제조항이 있고,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운항관리사, 수의사, 주택관리사, 청소년상담사 등 6개의 자격은 벌칙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보수교육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그에 따른 벌칙조항을 두어 강제성을 부과하였다면 동시에 면제조항도 함께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태료에 있어서도 자격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합리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IV. 면허형 국가자격 특성과 보수교육 실태

보수교육 실태 파악을 위해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 기관과 자격 취득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수교육 기관의 경우 전체 148개 면허형 국가자격 중에서 전문협회나 보수교육 기관이 없는 25개를 제외한 123개 자격에 대한 기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수교육 실시 현황을 면허 유형별로 보면, 사업면허형의 보수교육 비율이 81.8%로 가장 높고, 직무허가형이 56.9%, 의무배치형은 44.4%, 행위허가형 41.7%의 순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유형별 보수교육 실시 현황은, 사업면허형의 보수교육 비율이 81.8%로 가장 높고, 직무허가형 56.9%, 의무배치형 44.4%, 행위허가형 41.7% 순으로 나타남

자격 취득자의 경우 148개 면허형 국가자격 중에서 '자동차운전면허'와 '언어재활사(신규)'를 제외한 146개 자격 4,500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격 취득자 조사는 이 146개의 자격 중 보수교육이 있는 자격 취득자에 대한 조사와 보수교육이 없는 자격 취득자에 대한 조사로 구분된다. 조사는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146개 자격 중 보수교육이 있는 자격 82개의 응답자는 3,276명이며,

1개 자격별로 평균 40여명 정도가 응답하였다. 보수교육 미 시행 자격 64개에 있어서는 1,224명이 응답하여 1개 자격별로 평균 20명 정도가 응답하였다. 응답자가 5명 미만인 자격은 원자로나 방사성 관련 특수 면허와 항공 관련 면허를 갖고 있는 자격 취득자들이었다. 응답자 수가 적은 일부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 취득자 수가 적고, 자격 취득자가 종사하는 직업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특정 자격의 경우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본조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그림 1]에서와 같이 자격의 특성, 보수교육 실태 및 보수교육 기관 조사와 자격 취득자 조사를 통한 자격 특성 등을 결합하여 보수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1. 국가자격 특성과 보수교육 실태 분석 내용

자격 특성 (146개 자격, 4,500명 조사)	보수교육 특성 (95개 자격, 87기관 조사)	자격특성과 보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취득자 특성</li> <li>· 직업 직무 특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li> <li>· 자격의 가치 평가</li> <li>· 교육훈련특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교육기관의 일반적 현황</li> <li>· 보수교육 관리운영 실태</li> <li>· 보수교육 프로그램 실태</li> <li>· 보수교육 비용 및 재정 실태</li> <li>· 보수교육의 질관리 실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 특성과 보수교육</li> <li>· 자격특성과 보수교육</li> <li>· 교육훈련과 보수교육</li> </ul>

### 1. 면허형 국가자격의 특성 분석

국가자격 취득자의 월평균 임금은 345.5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표 3〉은 면허형 국가자격의 개별 자격에 대한 소득을 조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45.4만 원임을 감안할 때 국가자격 취득자의 월평균 임금 345.5만 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임금이 특히 높은 자격은 도선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조종사, 전문의, 항공기관사, 변호사 등으로, 평균 7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면허형 국가자격별 월평균 소득

(단위: 만 원)

자격명	월소득	자격명	월소득	자격명	월소득
도선사**	878.2	소형선박조정사*	349.6	행정사*	262.9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799.5	수면비행선박조종사*	349.6	보육교사*	262.6
운송용조종사**	795.6	정교사*	346.9	구명정수*	262.1
자가용조종사**	795.6	공인노무사**	343.9	임상병리사**	261.1
사업용조종사**	795.6	약사**	343.2	호텔서비스사*	258.0
전문의**	766.6	운항관리사**	342.8	통신사*	256.9
경량항공기조종사**	765.2	검수사*	342.1	청소년상담사*	255.0
항공기관사**	750.0	감정사*	341.2	보세사*	254.7
변호사**	738.3	손해사정사**	340.5	정신보건간호사*	253.8
치과의사**	685.3	화재조사관***	337.0	운항사*	252.1
경주선수***	625.7	항공교통관제사**	333.6	농산물품질관리사*	250.3
의사**	583.3	군항공교통관제사*	333.6	위생사**	250.0
호텔경영사***	580.0	소방안전교육사*	333.6	주류제조관리사**	242.2
공인회계사**	571.0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32.9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42.0
한의사**	565.8	항해사***	331.8	한국어교원*	241.4
세무사**	551.9	호텔관리사*	331.4	안마사***	240.4
아마추어무선기사*	524.5	준교사*	331.2	의무기록사**	238.5
한약업사*	517.1	문화재수리기술자*	329.8	간호사**	238.1
경비지도사*	504.8	무대예술전문인*	328.4	장레지도사**	237.5
변리사**	497.5	실기교사*	325.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37.2
한약조제사*	489.6	항공정비사**	324.3	안경사**	236.0
법무사**	488.5	관광통역안내사*	321.5	전문상담교사***	233.0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484.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면허*	319.6	치과기공사**	232.6
부조종사*	455.8	건축사*	317.4	사회환경교육지도사*	231.0
감정평가사**	437.5	사서교사*	315.3	경주심판*	224.5
철도차량운전면허***	433.3	철도안전전문기술자*	312.0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20.9
가축인공수정사*	432.9	가맹거래사*	311.9	조산사***	214.6
장제사*	424.5	보건교사**	311.4	화물운송종사자격**	214.5
외국세무자문사*	419.0	교통안전관리자**	308.3	물리치료사**	212.0

<표 계속>

## 이슈 분석

자격명	월소득	자격명	월소득	자격명	월소득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412.8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305.6	작업치료사**	209.8
기술지도사*	412.6	검량사*	299.6	청소년지도사**	205.4
보험계리사**	405.4	환지사*	299.5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 검정원*	202.4
수의사**	396.6	응급구조사**	288.3	의료관리자*	202.2
경영지도사*	393.5	무선통신사*	287.1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198.5
기관사**	392.2	물류관리사**	286.4	치과위생사**	198.3
임상영양사*	387.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85.0	국외여행인솔사**	195.0
농산물검사원*	386.1	공인중개사**	284.0	국내여행안내사**	195.0
전문간호사*	382.8	환경측정분석사*	282.8	영양사**	190.5
관세사**	379.7	수산질병관리사***	281.0	사회복지사**	189.0
한약사**	373.9	주택관리사**	279.7	영양교사***	180.0
문화재수리기능자*	372.0	보건교육사*	279.7	재활승마지도사**	175.0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372.0	유통관리사***	274.0	말조련사**	170.7
경기지도사*	369.7	방사선사**	271.0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66.6
산업안전지도사*	362.3	항공사*	269.7	생활체육지도사***	166.6
소방시설관리사**	361.0	산림치유지도사*	268.4	평생교육사***	166.6
경매사**	359.0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268.3	간호조무사**	163.3
원자로조종사면허*	354.6	사서**	268.0	택시운전자격**	142.7
보험중계사*	353.8	의지·보조기기사**	267.0	요양보호사***	120.0
산림기술사	351.9	산업위생지도사*	263.9		

주: 언어재활사는 월평균 소득이 206.0만 원임(한국고용정보원 직업정보검색).

자료: \* 68개 자격 - 본 연구의 자격 취득자 실태조사 결과(2012. 6)

\*\* 63개 자격 -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정보검색 <http://www.work.go.kr/jobMain.do>

\*\*\* 15개 자격 - 전문협회 홈페이지,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자격관련 보도기사

소득의 경우 사업면허형  
이 가장 높았으며, 직무  
허가형, 의무배치형, 행위  
허가형의 순

이러한 자격의 특성을 면허 유형별로 살펴보면(<표 4>),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사업면허형이었으며, 연령별로는 모든 유형에서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이 의무배치형과 직무허가형이었다. 소득의 경우 사업면허형이 가장 높았으며, 직무허가형, 의무배치형, 행위허가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면허형 국가자격 유형별 개인적 특성

(단위: 명, %, 만 원)

구분		자격 유형				개수 (비율)	$\chi^2$
		사업 면허형	의무 배치형	직무 허가형	행위 허가형		
성별	남성	832	638	761	208	2,439	$\chi^2=77.499^{***}$
		(64.4)	(50.7)	(50.1)	(48.0)	(54.2)	
여성	여성	459	620	757	225	2,061	
		(35.6)	(49.3)	(49.9)	(52.0)	(45.8)	
연령	20대	323	389	390	156	1,258	$\chi^2=66.826^{***}$
		(25.0)	(30.9)	(25.7)	(36.0)	(28.0)	
	30대	484	479	556	181	1,700	
		(37.5)	(38.1)	(36.6)	(41.8)	(37.8)	
	40대	324	254	384	75	1,037	
		(25.1)	(20.2)	(25.3)	(17.3)	(23.0)	
50대	131	126	164	19	440		
	(10.1)	(10.0)	(10.8)	(4.4)	(9.8)		
60대 이상	29	10	24	2	65		
	(2.2)	(0.8)	(1.6)	(0.5)	(1.4)		
학력	중졸 이하	7	5	14	1	27	$\chi^2=73.684^{***}$
		(0.5)	(0.4)	(0.9)	(0.2)	(0.6)	
	고졸	249	220	223	103	795	
		(19.3)	(17.5)	(14.7)	(23.8)	(17.7)	
	대졸	837	916	1056	307	3,116	
(64.8)		(72.8)	(69.6)	(70.9)	(69.2)		
대학원졸	198	117	225	22	562		
	(15.3)	(9.3)	(14.8)	(5.1)	(12.5)		
소득	150만원 미만	236	307	295	105	943	$\chi^2=129.500^{***}$
		(18.3)	(24.4)	(19.4)	(24.2)	(21.0)	
	150~299만원	385	458	599	179	1,621	
		(29.8)	(36.4)	(39.5)	(41.3)	(36.0)	
	300~499만원	382	320	414	103	1,219	
		(29.6)	(25.4)	(27.3)	(23.8)	(27.1)	
	500~699만원	153	126	144	31	454	
(11.9)		(10.0)	(9.5)	(7.2)	(10.1)		
700~899만원	74	31	50	11	166		
	(5.7)	(2.5)	(3.3)	(2.5)	(3.7)		
900만원 이상	61	16	16	4	97		
	(4.7)	(1.3)	(1.1)	(0.9)	(2.2)		
일평균 소득(만 원)		413.1	310.2	350.7	279.2	346.5	
전체		1,291	1,258	1,518	433	4,500	

주: \*\*\*p<.001

자격증과 동일한 직업을 가진 자격 취득자가 90.9%에 달해 자격증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음

한편, 자격증과 동일한 직업을 가진 자격 취득자가 90.9%에 달해 자격증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직무관련성 또한 평균 3.64점(5점 척도)으로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5>에 따르면 자격별 가치 평가 결과, 4점 이상인 자격이 전체 146개 중 의사, 산림기술사, 치과의사, 한약업사, 한의사, 장제사 등 6개 자격으로 이들 자격의 취득자가 인식하는 자격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유형별로는 사업면허형이 가장 높고 의무배치형, 직무허가형, 행위허가형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무관련성 결과도 이와 같은 순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직무와 관련이 높을수록 자격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자격 취득자의 자격에 대한 가치 평가

(단위: 점)

자격명	평균	자격명	평균	자격명	평균
의사	4.3	무선통신사	3.1	사서	2.7
산림기술사	4.0	소방안전교육사	3.1	자가용조종사	2.7
치과의사	4.0	항공기관사	3.1	요양보호사	2.7
한약업사	4.0	임상병리사	3.1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2.7
한의사	4.0	의지·보조기기사	3.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2.7
장제사	4.0	세무사	3.1	보건교육사	2.7
전문의	3.9	농산물검사원	3.0	보건교사	2.7
철도안전전문기술자	3.9	전문상담교사	3.0	한국어교원	2.7
공인노무사	3.8	전문간호사	3.0	농산물품질관리사	2.7
경비지도사	3.8	치과위생사	3.0	국외여행인솔자	2.7
간호사	3.7	공인중개사	3.0	간호조무사	2.6
운항관리사	3.7	항공정비사	3.0	경기지도사	2.6
약사	3.6	사회환경교육지도사	3.0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6
항공교통관제사	3.6	검량사	3.0	경영지도사	2.6
한약사	3.5	항해사	3.0	보세사	2.6
작업치료사	3.4	정신보건간호사	3.0	준교사	2.6
화재조사관	3.4	방사선사	3.0	사서교사	2.6
감정평가사	3.4	영양사	3.0	철도차량운전면허	2.6

<표 계속>

자격명	평균	자격명	평균	자격명	평균
공인회계사	3.4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2.9	장례지도사	2.5
경매사	3.4	법무사	2.9	주택관리사	2.5
보험계리사	3.4	도선사	2.9	물류관리사	2.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3.4	수산질병관리사	2.9	응급구조사	2.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4	검수사	2.9	말조련사	2.5
호텔서비스사	3.4	동력수상레저지구 조종면허	2.9	호텔경영사	2.5
안마사	3.4	환지사	2.9	운송용조종사	2.5
정교사	3.4	안경사	2.9	평생교육사	2.5
소형선박조정사	3.3	수면비행선박조종사	2.9	원자로조종사면허	2.5
경량항공기조종사	3.3	청소년지도사	2.9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2.4
의료관리자	3.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9	보험중계사	2.4
관세사	3.3	치과기공사	2.9	문화재수리기능자	2.4
구멍정수	3.2	의무기록사	2.9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원	2.4
가축인공수정사	3.2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2.9	환경측정분석사	2.4
철도은행안전관리자	3.2	청소년상담사	2.9	호텔관리사	2.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3.2	행정사	2.8	가맹거래사	2.4
보육교사	3.2	항공사	2.8	교통안전관리자	2.3
수의사	3.2	관광통역안내사	2.8	화물운송종사자격	2.3
조산사	3.2	통신사	2.8	경주선수	2.3
영양교사	3.2	한약조제사	2.8	손해사정사	2.3
운항사	3.2	소방시설관리사	2.8	군항공교통관제사	2.3
무대예술전문인	3.1	재활승마지도사	2.8	택시운전자격	2.2
물리치료사	3.1	감정사	2.8	실기교사	2.2
부조종사	3.1	산업안전지도사	2.8	산업위생지도사	2.1
사회복지사	3.1	문화재수리기술자	2.8	국내여행안내사	2.1
기관사	3.1	변리사	2.8	유통관리사	2.0
건축사	3.1	주류제조관리사	2.8	외국세무자문사	2.0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3.1	임상영양사	2.8	사업용조종사	1.9
변호사	3.1	위생사	2.7	아마추어무선기사	1.5
기술지도사	3.1	생활체육지도사	2.7	경주심판	1.3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3.1	산림치유지도사	2.7		

주: 1) 5점 척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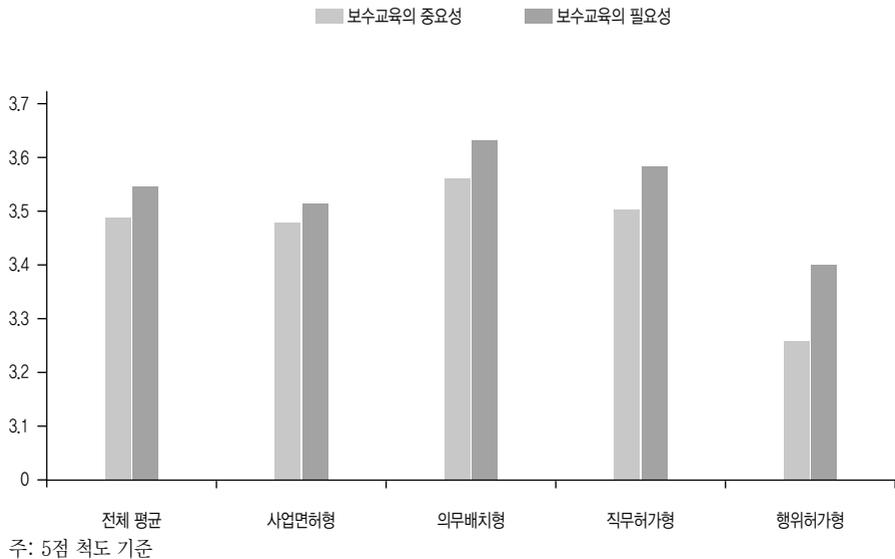
2) 개별 국가자격의 자격에 대한 가치 평가를 위한 9개의 항목에 대한 평균

## 이슈 분석

보수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의무 배치형이 3.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위허가형이 3.26점으로 가장 낮았음.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요성보다 약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참여 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보수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의무배치형이 3.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행위허가형이 3.26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요성보다 약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보수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



다음으로 면허 유형별로 자발적 교육 참여 여부 및 교육 비용, 시간을 살펴보면, 의무배치형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행위허가형이 41.8%로 가장 낮았으나 4가지 유형 모두 전체 평균인 43.6%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발적 참여 교육 시간은 연평균 42.7시간으로 의무배치형만 낮고, 나머지 유형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 자발적 교육훈련 참여 특성

(단위: %, 원, 시간)

평가 항목		유형	전체 평균	사업 면허형	의무 배치형	직무 허가형	행위 허가형
		예	아니오				
자발적 참여 교육 여부	예		43.6	42.2	45.2	43.9	41.8
	아니오		56.4	57.8	54.8	56.1	58.2
자발적 참여 교육 비용			336,318.4	406,263.1	277,727.6	309,031.5	410,303.9
자발적 참여 교육 시간			42.7	44.4	37.7	45.2	44.3

## 2.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 실태

여기에서는 면허형 국가자격 특성에 이어 보수교육에 대한 실태를 보수교육 기관 현황, 보수교육 관리 및 운영, 보수교육 프로그램, 보수교육 기관 재정 및 비용, 보수교육에 대한 질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보수교육 기관 현황이다. 2000년 이전에 보수교육을 실시한 비율이 약 47%이고, 2000년 이후가 33%인 것으로 보아 보수교육이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 73.1%였으며, 62.7%가 보수교육을 위임·위탁하고 있었다. 보수교육 기관 지정 시 요건 평가 후 지정하는 경우가 49.3%, 특정 기관을 임의로 지정하는 경우가 44.8%, 기타가 6.0%였다. 회원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기관은 86.6%로 대다수의 기관에서 회원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연령, 직장, 주소, 학위, 직업, 직위 순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었다.

보수교육 기관 중 73.1%가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며, 62.7%가 보수교육을 위임·위탁. 보수교육 참여 형태에 있어서는 법정업무사항의 비중이 가장 높음

둘째, 보수교육 관리 및 운영 실태이다. 보수교육 참여 형태에 있어서도 법정업무사항이 76.1%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율 참여와 회원 의무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소관 부처 보고·승인 사항은 보수교육 계획과 운영, 실적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보수교육 계획이 64.2%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기관이 보수교육 계획, 운영, 실적 등에 관해 승인을 받고 있었으나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14.9%, 6.0%만 보고·승인하고 있어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겠다.

보수교육은 집체교육의 비중이 높고, 회비가 기관의 주된 재원 총당 수단임. 질 관리는 형식적인 단순 평가에 머물러 있음

셋째, 보수교육 프로그램 실태이다. 보수교육은 집체교육이 약 90%로 온라인 교육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집체교육 시 10~30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교육은 60% 정도가 외부강사를 초빙해 진행하며 주로 실무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자체에서 강사진을 구성하는 경우도 40%나 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응답 기관의 71.6%가 보수교육 교재를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로 소관 부처와 관련 협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 더욱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보수교육 재정 및 비용 실태이다. 대부분의 보수교육 기관에서 연간 8만 4,100원 정도의 회비를 받고 있었으며, 이는 기관의 재원 총당을 위한 주된 수단이었다. 그 외에 정부 지원이 25.4%, 수수료가 19.4%, 자체 예산이 9.0%였다. 보수교육 수수료를 받는 기관은 67.2%이며, 수수료는 연평균 26만 800원이었다. 보수교육 비용 책정 주체에 있어서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비율이 46.3%로 가장 많았다. 보수교육의 비용 부담 주체는 '본인'이 26.9%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 지원'과 '본인과 고용주'가 비슷한 비율로 그 뒤를 이었다.

다섯째, 보수교육의 질 관리 실태이다.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요구 조사는 34.3%만이 실시하고 있었다. 31.3%에 해당하는 기관 및 협회가 교육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만족도 조사와 출결 체크를 실시하는 비율도 각각 44.8%, 31.3% 정도였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곳이 약 40%에 달하며, 평가를 하더라도 학습자 만족도 조사가 대부분이고, 성과 평가나 강의 평가를 실시하는 비율은 30%에 그쳐 형식적인 단순 평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면허형 국가자격의 보수교육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보수교육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자격유형과 관련해서는 사업 면허형에 비해 의무배치형과 직무허가형의 경우 자발적 교육 참여를 더 잘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 대학원 졸업자의 자발적 교육 참여가 높았다. 특히, 자격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을수록 자발적 교육 참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교육 참여 정도는 사업면허형에 비해 의무배치형과 직무허가형이,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격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표 7. 보수교육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비표준화 계수		β	t
		B	SE		
상수		1,852	.076		24.409
자격 유형	의무배치형	.179	.033	.088	5.367***
	직무허가형	.141	.032	.073	4.395***
	행위허가형	.085	.047	.027	1.800
학력	대졸	.039	.033	.020	1.187
	대학원졸	.095	.048	.034	1.959*
개인적 속성	성별	-.024	.027	-.013	-.895
	연령	.002	.001	.018	1.234
	소득	7.219E-05	.000	.017	1.058
자격 가치 평가	자격 가치 평가	.050	.002	.410	29.271***
R <sup>2</sup>		.177			
adjusted R <sup>2</sup>		.175			

주: 1) 자격 유형의 기준 범주: 사업면허형, 학력의 기준 범주: 고졸, 성별: 여자=0, 남자=1로 설정함.  
 2) \*p<.05, \*\*\*p<.001

## V. 결론 및 제언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면허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취득 후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하겠다. 이는 26개의 부·처·청·위원회에서 75개의 개별법에 의해 148개의 자격을 각각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격의 활용 측면에서 유사한 전문적 수준이나 직업적 권한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의 차이는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면허 유형이라 할지라도 의무규정과 권고규정이 없거나 과

태료의 차이가 있는 등 일관성이 없는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자격에서의 보수교육 차이는 개인이 소지한 자격의 가치에 대한 평가의 차이이거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직업적 권한에 대한 인식 부족, 또한 자격 취득자들의 보수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격 취득자가 보수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보수교육 운영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법률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같은 개인 차원의 문제와 면허 유형에 따른 직업적 권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응집하지 못하는 전문협회의 역량 부족,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 등의 미비가 보수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 ① 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모색, ② 전문협회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③ 국가적 차원에서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따라서 보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보수교육 참여자인 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문협회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격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률적 체계의 정비와 필요한 조항의 개정, 그리고 보수교육의 미이수 시의 제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미숙(2012.3.15). 「실무형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자격 관리운영 체계 개선」, 국책 연구기관정기서면보고(미간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미숙 · 주인중 · 최영렬(2011). 『공정사회 기반마련을 위한 국가자격 관리 · 운영 체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미숙 · 주인중 · 김덕기 · 오혁제(2012). 『면허형 국가자격 보수교육 실태 분석』, 한국 직업능력개발원(발간 예정).
- 김현수 외(2007).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명훈 · 김현수 · 김덕기(2000).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개편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승우(2002). 『직업선택의 자유와 면허제도』, 세창출판사.
- M. M. Kleiner(2006). *Licensing Occupation: ensuring quality or restricting competition?*. W.E.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Michigan.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http://www.work.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